

[서식 예] 공시최고신청서(자기앞수표)

공시최고신청

신청인 〇〇〇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자기앞수표 공시최고

증서의 중요한 취지: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.

신 청 취 지

별지목록 기재 증서에 관하여 공시최고를 한 뒤 공시최고에서 정한 기일까지 권리신 고 등이 없으면 위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원 인

- 1. 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자기앞수표의 최후 소지인이었는데, 20○○. ○. ○. 15:30분경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소재 ○○역에 기차표를 예매하러 갔다 가 역 대합실에서 가방 속에 넣어둔 손 지갑을 분실하면서 지갑 속에 들어있던 위 수표를 함께 분실하고서는 현재까지 증서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- 2. 따라서 위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는 제권판결을 받고자 이 사건 공시최고를 신청합니다.



소 명 방 법

1. 소갑 제1호증 미지급증명서(◉◉은행)

1. 소갑 제2호증 분실신고접수증명서(◎◎경찰서)

첨 부 서 류

1. 소갑 제1호증(미지급증명서) 1통

1. 소갑 제2호증(분실신고접수증명서)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0. 00.

위 신청인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ㅇㅇ지방법원 귀중



[별 지]

증서의 중요한 취지

1. 종 류 : 자기앞수표

1. 번호 : 나가ㅇㅇㅇㅇㅇㅇ

1. 액 면 : 금 300,000원

1. 발행일 : 20 0 0 . 0 0 0 0 .

1. 발행인겸지급인 : ○○은행 ○○지점

1. 최종소지인 : ㅇㅇㅇ. 끝.



| 관할법원 | ※ 아래(1)참조 |
|---------------|--|
| 제출부수 | ※ 아내(1)점소 신청서 1부 관련 법 규 민사소송법 제475 내지 제497조 |
| | ·공시최고의 불허결정 및 제권판결의 각하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|
| 불복절차 및 기 간 |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 즉시항고(민사소송법 제478조, 제488조) |
| | |
| | ·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444조) ·인지액 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|
| 비용 | |
| |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 |
| | ・신문공고료 : 각 지방에 따라 다르나 서울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|
| | 소액 증권의 경우 25,000원(대상증서가 복수인 경우 그 증서가 |
| | 같은 종류로서 번호가 연결된 것인 때는 초과 1매당 일정액이 |
| | 가산됨), 500만원 초과는 50,000원을 현금으로 예납하여야 함. |
| | (공시최고 신문공고의 전면폐지 및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로 대 |
| | 체 : 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 |
| | |
| | 규(재민 2000-6) 개정 2008. 12. 10. [재판예규 제1258호, 시행 |
| | 2009. 1. 1.] 참조) |
| 의 의 | 공시최고의 절차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공시의 방법으 |
| | 로 누구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법률상 어떤 청 |
| | 구를 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가 있으면 이를 신고하라는 최고를 하 |
| | 고, 아무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|
| | 그 지위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하며, 법률로 정한 경우에 |
| | 만 할 수 있음(민사소송법 제475조). |
| 기 타 | |
| | ·신청인은 공시최고신청을 함에 있어 증서를 특정하기 위하여 목 |
| | 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대신에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발 |
| | 행한 미지급증명서, 미제시증명서, 미상환증명서 등 증명서를 첨 |
| | |
| | 부할 수 있음. 이 경우 접수담당 법원 사무관 등은 증명서에 기재 |
| | 된 증서의 내역을 법원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{공시최고신청 |
| | 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(재민 2000-6)}. |
| | |

※ (1) 관 할 법 원(민사소송법 제476조)

①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 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. 다만,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에 신청할 수 있다.



- ②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(민사소송법 제492조)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. 다만,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,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.
-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한다.